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3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4.

박 왕 규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왕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달서구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응과 성장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6조는 지원사업 및 위탁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40
----------	----------

발의연월일 : 2024. 4. 5.
발의자 : 박왕규, 장호섭, 이선주,
정순옥, 박정환, 최홍린

1. 제안이유

- 달서구 위기청소년의 발굴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적응과 성장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 시행(안 제4조)
- 라. 지원사업 및 위탁(안 제5조~6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안 제7조)
- 바.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운영
 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연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5. 위기청소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
 6. 위기청소년 후견인 지정 등 예방·회복 보호지원
 7.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31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 · 태도 ·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2023. 4. 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 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2. 30.>